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16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마약류 정보의 유통방지〉

■ 양부남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517호)

2024. 1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마약류 정보가 불법정보에 포함됨을 명시(안 제44조의7제1항제6호 의4 신설)	3
2. 마약류 정보에 대한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안 제44조의9제1항제4 호 신설)	9
3. 마약류 정보 유통에 대한 처벌(안 제74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등)	14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양부남의원 등 13인

나. 발 의 일 : 2024. 10. 4.

다. 회 부 일 : 2024. 10. 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란정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등을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용,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이하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라 함)의 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효과적인 유통방지를 위해 해당 정보가 현행법에서 금지하는 불법정보의 일종임을 명시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불법정보의 범주에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해당 정보를 게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를 통해 창출한 수익을 몰수 및 추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1항제6호의4, 제44조의9제1항제4호, 제74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마약류 정보가 불법정보에 포함됨을 명시(안 제44조의7제1항제6호의4 신설)

가. 개정안 요지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용,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이하 “마약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하는 것을 금지함(안 44조의7 제1항 제6호의4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6의3. (생략) <u><신설></u>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 ----- ----- -----. 1. ~ 6의3. (현행과 같음) 6의4. <u>「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용,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u>
7. ~ 9. (생략)	7. ~ 9.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u>제6호의2</u> 및 <u>제6호의3</u>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③ ~ ⑤ (생략)	② ----- -----<u>제6호의2</u>, <u>제6호의3</u> 및 <u>제6호의4</u>----- ----- ----- ----- ----- ----- ----- ----- ----- ----- -----. ③ ~ ⑤ (현행과 같음)

다. 검토사항

- 「2023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국내 마약류(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¹⁾ 사범은 2020년 18,050명, 2021년 16,153명, 2022년 18,395명, 2023년 27,611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다크넷(Darknet)²⁾이나 텔레그램 등 인터넷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의 종류 및 각각의 정의에 대해서는 참고자료 1 참조
 2) 다크넷(Darknet)이란 사용자가 익명성을 목적으로 자신의 접속정보(IP 주소, 데이터 흐름 등)를 소프트웨어(Tor 또는 I2P 등)를 통해 암호화한 후 접속 가능한 웹사이트로서, 인권운동 및 언론 자유에 기여하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마약, 총기, 음란물 밀매, 사기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임.

· SNS를 이용하여 비교적 쉽게 마약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 지적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마약류 정보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각 호에 따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정보(불법정보)³⁾에 포함됨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어떠한 정보가 불법정보에 포함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차단을 명할 수 있게 됨⁴⁾.

3)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 6의3. 총포·화약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4)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

- 마약류 정보는 현행법상으로도 이미 불법정보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현재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시정요구를 거쳐 마약류 정보에 대한 삭제 등 차단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라 마약류 정보가 새롭게 불법정보로 지정되는 것은 아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마약류의 사용,
 매매, 매매의 알선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므로⁵⁾,
 마약류 정보는 현행 제44조의7 제1항 제9호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정보’에 해당함.

<마약류 정보에 대한 방심위 심의·시정요구 현황>

	2021년		2022년		2023년	
	심의	시정요구	심의	시정요구	심의	시정요구
마약류 정보	17,020	17,020	26,013	26,013	30,503	30,503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마약류 정보를 별도의 호로 명시하는 경우
 해당 정보가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관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제1항제9호의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을 포함한다]이 있었을 것
 2.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관 관리·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
- 5) 현행법상 마약류 단속 규정에 대해서는 참고자료 2 참조

마약류 정보 유통의 사회적 영향, 유통방지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명시된 다른 불법정보의 경우와 별도로 호를 신설하여 명시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한편,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에서 마약류 정보를 불법정보에 포함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마약류 정보 등을 삭제 등 조치하도록 하려는 동법 개정안(의안번호 제2202971호, 김승수의원 대표발의)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는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9호를 통해 마약류 정보의 유통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마약류 정보를 불법정보에 추가할 실익이 낮다는 입장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9호로도 규제가 가능하여 개정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마약류 관련 범죄의 중대성 및 국민 건강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마약류 정보가 불법정보의 일종임을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제출함.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마약류 정보에 대해서는 현행법으로도 규율이 가능하여 중복규제의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마약류 정보에 대해서는 현행법으로도 규율이

가능하고, 줄임말·은어 등의 사용으로 유통되고 있는 정보가
마약류 정보에 해당하는지 즉각적인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모든 마약류 정보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2. 마약류 정보에 대한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안 제44조의9제1항제4호 신설)

가. 개정안 요지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마약류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안 제44조의9 제1항제4호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4조의9(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이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제44조의9(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① ----- ----- ----- ----- ----- ----- ----- ----- ----- ----- ----- ----- -----

현행	개정안
한다. 1. ~ 3. (생략) <u><신설></u> ②·③ (생략)	-----. 1. ~ 3. (현행과 같음) 4. 「 <u>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u> 」에서 금지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용,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②·③ (현행과 같음)

다. 검토사항

-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9 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정 기준⁶⁾에 해당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촬영물·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⁷⁾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6)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5조의2(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① 법 제44조의9제1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같은 법 제2조제14호 가목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
2.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같은 법 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고 별표 1의2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고 별표 1의2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7)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⁸⁾(“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함⁹⁾.

-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는 동조 제2항에 따라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¹⁰⁾.

○ 개정안은 ‘불법촬영물등’에 개정안에 따른 마약류 정보도 포함함으로써,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가 마약류 정보에 대해서도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 다만 성범죄 관련 정보에 해당하는 현행법상 불법촬영물등과 마약류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9) **제44조의9(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이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10) **제44조의9(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②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 업무를 수행한다.

정보의 성격이 상이함을 고려할 때, 마약류 정보를 불법촬영물등에 포함하는 것은 현행 조문의 취지 및 법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보임.

- 특히 현행 제44조의9 제2항은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 조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의 ‘불법촬영물등’과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9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이 동일함을 고려할 때¹¹⁾ 정보통신망법에만 불법촬영물등에 마약류 정보를 추가하는 경우 법체계의 정합성에 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다른 불법정보와 달리 마약류 정보에 대해서만 유통방지 책임자가 유통방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방송통신위원회는 성범죄와 관련된 영상물인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책임자를 규정하고 있는 제44조의9에 피해 유형, 규제 방법

11)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제2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의무사업자”라 한다)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가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이 상이한 마약류 정보를 포함하는 것은 법체계에 맞지 않으므로 별도 조항에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현행 제44조의9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이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치의무 대상이 되는 ‘불법촬영물등’과 동일하므로, 타 법률과의 체계성·정합성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마약류 정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유통방지 책임을 담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사업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에 적극 협력하고 자율규제로 불법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방법이 실효성 있고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제출함.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9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 마약류 정보에 이에 포함하는 것은 법체계와 맞지 않다는 의견을 제출함.

3. 마약류 정보 유통에 대한 처벌(안 제74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등)

가. 개정안 요지

- 정보통신망에서 마약류 정보를 유통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74조 제1항 제3호의2 신설).
- 정보통신망에서 마약류 정보를 유통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음(안 제75조의2).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u><신설></u>	제74조(벌칙) ① ----- ----- ----- -----. 1. ~ 3. (현행과 같음) <u>3의2. 제44조의7제1항제6호의4</u> <u>를 위반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용,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정보를 게시한 자</u>
4. ~ 7. (생략)	4. ~ 7.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② (생략) 제75조의2(몰수·추징) 제72조제1항제2호 및 제73조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이 경우 몰수 또는 추징은 다른 벌칙에 부가하여 과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75조의2(몰수·추징) 제72조제1항제2호, 제73조제7호 및 제74조제1항제3호의2----- ----- ----- ----- ----- ----- -----.-----.

다. 검토사항

☐ 마약류 정보 유통에 대한 처벌

-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에서 마약류 정보를 유통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마약류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려는 것임.
- 다만, 마약류 정보 유통에 대해서는 이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정보통신망법에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2호는 동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62조 제1항 제4호에서 이를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¹²⁾.

□ 마약류 정보 유통에 따른 금품 등 이익의 몰수·추징

○ ‘몰수’란 범죄의 반복 방지나 범죄에 의한 이익의 금지를 목적으로 범죄행위와 관련된 재산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형이고,

‘추징’이란 몰수하여야 할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를 대신하여 그 가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말함.

○ 개정안은 마약류 정보 유통으로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에 대해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전적 이익 획득을

12)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

가.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

나.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

다.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

라. 제5조의2제5항

제6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2호를 위반하여 금지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한 자(예고임시마약류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광고”란 사업자등이 상품등에 관한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목적으로 하는 마약류 정보 유통을 방지하려는 것임.

- 다만 몰수는 징역형, 벌금형과 마찬가지로 형의 일종으로, 몰수 및 추징에 대해서는 「형법」 제48조 및 제49조에서 일반규정을 두고 있으며¹³⁾,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또한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중대범죄’에 포함하고, 중대범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報酬)로 얻은 재산 등에 대해서는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¹⁴⁾¹⁵⁾.

- 또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동법에서 처벌하고 있는 죄에

13)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② 제1항 각 호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③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電磁記錄)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제49조(몰수의 부가성)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 단,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1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정범죄”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는 제외한다)

2. “범죄수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報酬)로 얻은 재산

제8조(범죄수익등의 몰수) ① 다음 각 호의 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수익
2.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제10조(추징)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

15)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장기 3년)과 허위사실 명예훼손(장기 7년) 모두 ‘중대범죄’에 포함됨.

제공한 마약류 등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⁶⁾.

- 따라서 현행법에 의해서도 마약류 정보로 획득한 이익에 대한 몰수·추징이 가능하므로, 개정안과 같이 몰수·추징을 개별법에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은 낮을 것으로 보임.
- 방송통신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매매, 소유 등의 정보 게시에 대해서는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에서 몰수·추징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벌칙 및 몰수·추징 규정을 신설할 실익이 낮다는 입장임.

16) 제67조(몰수)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임시마약류 및 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 참고 1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의 정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마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양귀비: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Papaver setigerum DC.) 또는 파파베르 브락테아툼(Papaver bracteatum)

나. 아편: 양귀비의 액즙(液汁)이 응결(凝結)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 다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다. 코카 잎[엽]: 코카 관목[(灌木): 에리드록시론속(屬)의 모든 식물을 말한다]의 잎. 다만, 엑고닌·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한다.

라.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칼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그와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害毒)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거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製劑)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한외마약”(限外麻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라.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 또는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4. “대마”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엘(*Cannabis sativa* L.)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자(種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

가.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나.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다.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5.~9. (생략)

※ 참고 2 : 현행법상 마약류 단속 규정

법규	금지 행위	처벌규정	형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등	제58조~제68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등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별법」	- 업으로서 한 불법수익 - 불법수익의 은닉·가장 - 불법수익의 수수 - 마약류 물품의 수입·선동 등	제6조~제18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등(벌금 병과)
「형법」	- 아편 등의 제조 - 아편흡식기의 제조 - 세관공무원의 아편 등의 수입 - 아편 흡식 및 동 장소 제공 등	제198조~제206조	10년 이하의 징역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1호~4호, 제6호, 제7호에 규정된 죄 또는 그 미수죄 - 동법 제59조 제1항~제3항, 제60조에 규정된 죄	제11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등

(출처: 「2023 마약류 범죄백서」)

문 의 처

02)6788-5230